

최종보고서 2007-50

건강보험료 체계를 이용한 학자금대출 금리우대자 선정방안

신현웅 신영석

이현주 황도경

공경열 김진수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 출 문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귀하

본 보고서를 「건강보험료 체계를 이용한 학자금대출 금리우대자 선정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주관연구기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책임자 : 신현웅

연구 원 : 신영석

연구 원 : 이현주

연구 원 : 황도경

연구 원 : 공경열

연구 원 : 김진수

목 차

요 약	9
I. 서론	49
II.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이용 현황 및 문제점	52
1.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개요	52
2.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53
3. 학자금대출 운영조직	54
4. 내힘으로 학자금대출	55
5.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이용현황	58
6. 주요 정부학자금 융자사업	67
7. 해외 주요 학자금 융자제도	69
8.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의 문제점	72
III.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현황 및 문제점	74
1.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의 구성	74
2.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의 쟁점	84
3. 주요국의 부과체계	97

IV.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118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118
2. 차상위계층에 대한 법적·행정적 개념정의	126
3. 차상위계층에 대한 이론적 논의	132
4. 차상위계층의 대안적 기준설정 방식	149
5. 차상위계층의 범위	157
V. 건강보험 부과자료 분석	161
1. 부과자료 분석을 위한 데이터 구성	161
2. 모의운영을 위한 기초자료 분포	162
VI.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대상자 선정 개선방안	169
1. 학자금대출 일반현황	169
2. 대출당사자 현황 분석	174
3. 건강보험료 소득 재산 현황과 학자금대출 가구 비교	175
4. 건강보험료를 기준한 학자금대출 개선방안	178
VII. 결론 및 정책제언	191
참고문헌	193

표 목 차

〈표 3- 1〉	과세소득 500만원 초과 세대 소득등급별 점수	77
〈표 3- 2〉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 점수	78
〈표 3- 3〉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에 따른 구간별 점수표	80
〈표 3- 4〉	재산등급별 점수	81
〈표 3- 5〉	자동차등급별 점수	82
〈표 3- 6〉	지역가입자의 부과표준소득(점수) 등급별 점수	83
〈표 3- 7〉	직·역가입자의 법적 지위 비교	86
〈표 3- 8〉	직·역 가입자 보유 부과요소	90
〈표 3- 9〉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와 직장가입자 보수기준 보험료 비교	94
〈표 3-10〉	직·역 세대의 재산과표 보유현황	95
〈표 3-11〉	각 질병금고의 연도별 평균보험료를 추이	100
〈표 3-12〉	연도별 사회보험의 보험료를 추이	101
〈표 3-13〉	일반제도 건강보험 보험료율의 변화	103
〈표 3-14〉	직종별 공적 건강보험 보험료율 (2006년)	104
〈표 3-15〉	피보험자의 실제보수월액과 표준보수월액	107
〈표 3-16〉	선원보험의 보험료율 (2005년 9월)	109
〈표 3-17〉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산정 방식	110
〈표 3-18〉	보험료부과기준 등급별 표준소득월액	112
〈표 3-19〉	보험료 분담률	112
〈표 3-20〉	보험료 산정방식	113
〈표 3-21〉	연도별 정부별 보조금 지원 추이	115
〈표 3-22〉	연도별 보험수입총액 대비 정부보조금 비중 추이	115
〈표 3-23〉	2005년 적용 범주별 보험료 징수율 현황	117

〈표 4- 1〉 가구원 판별기준	121
〈표 4- 2〉 개인단위 보장	122
〈표 4- 3〉 특례급여 수급자격 예	123
〈표 4- 4〉 2007년 최저생계비(중소도시 기준) 기준	124
〈표 4- 5〉 주요기관 및 국가들의 상대빈곤선	136
〈표 4- 6〉 급여형태별 특성 비교	151
〈표 4- 7〉 경상소득 기준 차상위계층 규모	158
〈표 5- 1〉 자격정보	161
〈표 5- 2〉 보험료 정보	161
〈표 5- 3〉 소득정보	162
〈표 5- 4〉 재산정보	162
〈표 5- 5〉 자동차자료	162
〈표 5- 6〉 건강보험적용현황 및 표본자료현황	163
〈표 5- 7〉 적용대상자의 소득 유형별 보유현황	164
〈표 5- 8〉 적용대상자의 재산 유형별 보유현황	164
〈표 5- 9〉 적용대상자의 자동차 보유현황	165
〈표 5-10〉 세대별 종합소득보유수준	166
〈표 5-11〉 세대별 과세재산보유수준	166
〈표 5-12〉 세대별 자동차보유현황	167
〈표 5-13〉 건강보험세대 과세자료 보유형태별 현황	167
〈표 6- 1〉 대상자 분위별 대출현황	169
〈표 6- 2〉 교육부산정 가구 환산소득과 대상자 분위별 대출현황	172
〈표 6- 3〉 대출대상자 가구의 환산소득 근거	173
〈표 6- 4〉 대출대상자 가구의 환산소득 근거	173
〈표 6- 5〉 학자금대출 당사자 성, 연령 현황	174
〈표 6- 6〉 학자금대출 당사자 보험증기준 직업군	174

〈표 6- 7〉 건강보험가입자 과세소득(종합소득) 보유현황과 학자금 대출가구 소득 비교	175
〈표 6- 8〉 건강보험가입자 과세재산 보유현황과 학자금 대출가구 재산 비교 ...	176
〈표 6- 9〉 건강보험가입자 과세자료 보유현황과 학자금 대출가구와 비교	177
〈표 6-10〉 경제활동참가율 점수	182
〈표 6-11〉 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 점수 및 추정소득 표	183
〈표 6-12〉 소득등급별 점수 및 추정소득	185
〈표 6-13〉 재산등급별 점수	186
〈표 6-14〉 자동차등급별 점수와 추정소득	189

그림 목 차

[그림 3-1]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	76
[그림 4-1]	부양의무자 기준의 적용 도해	126
[그림 4-2]	법정차상위계층의 위치	129
[그림 4-3]	소득과 재산기준을 고려한 정책표적집단 규모-1차 조사 (2003)	160
[그림 6-1]	소득과 재산기준을 고려한 정책표적집단 규모-1차 조사 (2003)	180

요 약

I. 서론

-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은 제16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당시 노무현 후보의 공약 『대학생 등록금·생활비 용자를 위한 ‘학자금 유동화기금’ 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를 경감』 한다는 내용에서 출발하였음.
- 2005년 1월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2005년 2학기 “서민·중산층의 대학생자녀 학자금 저리 장기대출” 시행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제도가 시행되었음.
- 본 제도는 서민·중산층 부모의 자녀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들의 자립심 고취를 통해 능력과 의욕이 있는 학생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교육복지국가를 달성하고자 추진되었음.
- 그러나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중 무이자·저리 대상자 선정이 매우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함.
 - － 특히 2007년 감사원 감사 결과 현재 금리우대자 선정과정에서 활용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자료는 직장과 지역의 부과체계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음.
 - － 또한 건강보험료만을 가지고 학자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직장가입자 중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을 감추기 위해 위장 취업한 경우 등에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게 되어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대상자 중 무이자 지원대상자, 2% 금리 보전 대상자 선정 등에 대해 건강보험료 만이 아닌 종합소득, 재산, 자동차, 경제활동능력 등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요소들을 활용하여 객관적인 선정 모델을 마련하고자 함.

II.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이용 현황 및 문제점(요약)

1.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개요

- ☐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은 제16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당시 노무현 후보의 공약 『대학생 등록금·생활비 용자를 위한 ‘학자금 유동화기금’ 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학부모 교육비 경감』 한다는 내용에서 출발하여 서민·중산층 부모의 자녀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들의 자립심 고취를 통해 능력과 의욕이 있는 학생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교육복지국가를 달성하고자 추진되었음.
- ☐ 법률적 근거는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임.

2.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 ☐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은 대학(원)생의 학비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금융기관의 학자금대출공급을 촉진하며, 이차보전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학비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고등교육 기회확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학자금대출 운영조직

- ☐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의 운영은 교육인적자원부(기금관리주체)와 한국주택금융공사(기금업무수탁기관), 대출대상 고등교육기관, 대출실행은행이 유기적인 결합관계를 유지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2007년2학기 현재 총 630여개 대학과 15개 은행이 참가하고 있음.

4. 내힘으로 학자금대출

- ☐ 『내힘으로 학자금대출』은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의 브랜드명으로,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중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고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성적평점이 70점 이상인 학생,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학생을 대상으로 대출을 하고 있으며, 취급실적은 다음과 같음.

학 기	무이자		저리		일반		합계(건/억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5.2학기	23,270	721	18,051	517	140,662	3,985	181,983	5,223
2006.1학기	18,963	627	17,774	575	219,490	7,129	256,227	8,331
2006.2학기	31,156	997	14,210	427	213,113	6,502	258,479	7,926
2007.1학기	22,954	810	19,682	647	265,909	9,500	308,545	10,957
계	96,343	3,155	69,717	2,166	839,174	27,116	1,005,234	32,437

5.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이용현황

○ 소득별

(단위 : 건/억원/(%))

구 분	2005.2학기		2006.1학기		2006.2학기		2007.1학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저소득	6,776	186	11,554	373	13,199	391	23,183	771
1분위	25,333	757	44,566	1,454	56,623	1,766	12,438	430
2분위	32,670	959	43,687	1,436	40,581	1,250	45,054	1,582
3분위	26,839	782	35,221	1,158	29,643	913	36,092	1,272
4분위	17,189	462	19,669	642	23,530	722	35,269	1,239
5분위	16,787	459	27,202	894	35,870	1,166	43,045	1,525
6분위	17,914	497	17,073	525	12,473	359	16,450	581
7분위	14,070	399	20,670	645	17,997	529	21,527	765
8분위	12,042	350	12,035	385	18,643	564	30,171	1,085
9분위	5,492	163	10,470	344	9,927	308	19,653	727
10분위	6,871	209	14,080	473	11,541	372	25,663	981
계	181,983	5,223	256,227	8,331	258,479	7,926	308,545	10,957

6. 주요 정부학자금 융자사업

- ☐ 정부의 주요 국고지원 학자금 융자사업은 국고대여 학자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 복지기금 학자금대부(국방부, 호국재단), 농어촌자녀 학자금대부(농림부, 학술진흥재단), 근로자 학자금대부(노동부), 산재근로자 학자금대부(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제대군인 학자금대부(국가보훈처) 등이 있음.

7. 해외 주요 학자금 융자제도

- ☐ 우리나라 외에도 미국(FSA), 영국(SLC), 네덜란드(IBG), 일본(JASSO), 호주(DEST) 등에서도 학자금 융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각 국가별로 특색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지속적인 관심과 교류가 필요함.

8.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의 문제점

- ☐ 현재 학자금대출제도는 2005년2학기부터 도입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다. 아직은 시행 초기라 다소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나, 관리주체와 수탁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신속하게 보완하여 제도의 조기 정착에 기여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음.
- ☐ 우대금리 대상자의 선발기간 단축 및 이중수혜를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봄.

III.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의 쟁점분석

1.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의 구성

- ☐ 보험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각각의 산정방법에 의해 가입자의 능력에 따라 산출됨.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일정기간 동안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정률의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임.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보험료부담능력을 나타내는 부과표준소득점수에 점수 당 금액을 곱하여 산출됨.
 - 부과표준소득점수

$$= \Sigma (\text{각 세대원의 소득(평가소득)점수} + \text{재산점수} + \text{자동차점수})$$
 - 보험료 = 부과표준소득점수 $\times$ 점수 당 금액
 - 과세소득기준으로 500만원을 초과하는 세대와 500만원 이하 세대의 소득 보험료의 산정방법을 각기 달리 적용함.

2.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의 쟁점

- ☐ 부과체계를 개선의 가장 큰 장벽은 건강보험 도입과정에서 형성된 제도기반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이질적인 집단으로 인정하는 국민의 정서 그리고 제도의 경직성이라고 할 수 있음.
- ☐ 현행 부과체계 문제점의 근본원인은 크게 법적·제도적 측면과 부담능력·부과요소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음.
 - 법적·제도적 측면은 부담주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고, 부담주체가 갖는 책임범위를 설정하며 부담능력의 수준을 제시함.
 - 부담능력·부과요소 측면은 부담의 적정성, 타당성, 형평성을 정하는 기준이며 이는 다시 보험료 부담주체, 부담능력에 영향을 미침.

〈표 1〉 직·역 가입자의 법적 지위 비교

구 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부담주체	가입자(피부양자 제외)와 사용자	동일세대 내 전 가입자
보험료 납부책임	사용자 책임	동일세대 내 가입자 보험료 연대책임
부담능력 판단기준	근로소득 유무	성별, 나이, 소득과 재산 보유유무

- 법적·제도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가입자 유형에 따라 부담주체, 부담능력 판단기준, 책임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법적 형평성 측면에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음.
- 직·역간의 제도적 차이에 있어 가장 대표적인 것은 피부양자제도임. 직장피부양자 자격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만으로 소득유무를 판단하므로 고액의 기타소득이 있는 자도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음. 또한 직장의 미성년자와는 다르게 지역의 미성년자는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음.
- 보험료 부과는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부과 행정은 행정의 일반원칙인 공정성, 신뢰성, 투명성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지역보험료 산정절차는 복잡하며, 개인의 부담능력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면서도 개인별 부담내역은 알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음.
- 직·역가입자가 동등한 부과요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기준에 의해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음.

〈표 2〉 지역가입자의 부과요소

적용 대상자 \ 부과요소	근로소득	종합소득 (근로소득제외)	재산	자동차	성·연령
직장가입자					
	●				
직장피부양자					
지역가입자					
	●	●	●	●	●

주: 1) 표의 음영은 적용대상자가 보유할 수 있는 부과요소

2) 검은 점은 현행부과체계 부과요소

- 직·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은 모두 과세소득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가입자의 사업소득은 왜곡이 있기 때문에 동등한 기준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 오히려 직·역간 불형평성을 초래할 수 있음.
- 지역의 사업소득간에도 문제가 있음.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등은 일반 근로자와 거의 다르지 않으나 사업소득에 준한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음.
- 직장 피부양자는 연금수령여부와 관계없이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으나 지역가입자는 연금수령액의 20%(평가율을 반영한 금액)에 의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음.
- 재산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뀔 때 보험료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소로 민원의 주 대상으로 작용함. 또한 재산 자체를 건강보험료의 부과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살필 필요가 있음. 만약 부과요소로서 정당성이 있다면 직장가입자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행정원리에도 맞고 직·역간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음.

- 자동차보험료도 재산보험료와 같은 맥락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고, 소득수준을 추정할 수 있는 요소로 다른 사치재도 동일한 선상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에 따른 보험료는 중복산정이라는 지적이 있음.
- 행정상의 문제점은 앞에서 논의된 부과체계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점에서 파생된 표면적인 현상임. 더욱 본질적인 문제점 중의 하나는 직장을 퇴직하고 지역으로 자격 변동된 가입자가 소득이 상실되었음에도 보험료가 증가한 경우임. 또한 많은 재산을 보유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도 주된 문제점임.

2. 주요국의 부과체계

가. 독일의 보험료 부과체계

- 독일의 공적 의료보험제도는 원래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연대에서 도입되었음. 따라서 독일의 공적 의료보험제도의 특징은 전문직 종사자, 자영업자, 고소득 근로자 등은 원칙적으로 공적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설계되었다는데 있음.
 - 일정 수입 이내에 있는 모든 근로자는 공적 의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건강보험의 재정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보험료로 충당됨.
- 보험료는 각 질병금고가 독자적으로 결정되며, 각 질병금고는 재정적으로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 독자성을 가짐. 근로자의 보험료 산정 한도액(Beitragsmessungsgrenze)은 2006년 월수입 3,562.5유로이며 연금 수급자의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연금액에 일반피보험자와 동일한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연금수급자와 연금보험자가 절반씩 부담함.
 - 또한 실직보험금을 수령하는 자에 대해서는 연방고용청이, 사회부조 수급자는 사회부조기관이, 그리고 병역 중에 있는 자는 연방정부가 각각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음.
- 독일의 공적 의료보험의 보험료율은 가입자의 과세 전 소득에 대한 정률의 보험료를 곱하여 산정됨. 자영업자는 원칙적으로 공적 의료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니며, 농민, 학

생, 연금수령자, 실업자 등에게는 독립적인 보험료율이 산정됨.

나. 프랑스의 부과체계

□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는 가입자의 직업 범주에 따라 조합주의 원칙을 기초로 형성되어 온 복잡한 복수의 하위제도가 공존하는 모자이크형 제도임.

- 따라서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주체도 제도(Régime)에 따라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적용대상 인구수를 기준으로 가장 비중이 큰 일반제도(Régime général)를 중심으로 제도 전체가 작동되고 있음.
- 일반제도가 차지하는 총 대상인구 대비 적용인구 비중은 2005년 말 현재 노령연금 보험(우리의 국민연금에 해당)의 경우 66%,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86%, 가족수당제도의 경우 전국민 단일제도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100%보장체계를 이루었으며, 일반제도 이외에는 자영자제도, 농업제도와 특수제도로 통칭되는 다양한 소규모 제도가 존재해 있음.
- 일반제도의 보험자인 전국건강보험공단(CNAMTS)은 프랑스 보건복지부(Ministre de la santé et des solidarités) 사회보장국(DSS, Direction de la sécurité sociale)의 감독 하에 기능하고 있으며 1996년부터 목표예산·관리협약의 틀 내에서 법정 건강보험제도의 관리자로서 기능을 수행함.

□ 프랑스 법정건강보험의 재정구조는 제도마다 다양하며, 1996년까지는 사용자가 임금의 일정비율을 납부하는 보험료에만 의존하였음. 1996년 이후, 보건의료 지출은 매년 증가로 새로운 부과체계를 도입함.

- 프랑스 건강보험제도는 재원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에 의해 조달하고, 정부의 일반재원 보조는 1% 이하로 상징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음. 하지만, 근로자 임금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통상의 보험료뿐만 아니라 임금소득 이외의 모든 소득에 부과되는 준조세적 성격의 일반사회보장분담금(CSG)과 함께 여러 가지 사회보장 목적세가 존재하여 건강보험의 재원으로서 충당되고 있음.

- 보험료이외의 준조세적 성격을 갖는 사회보험료인 일반사회보장분담금(CSG)은 임금, 자본소득, 도박이익, 연금 등의 다양한 재원으로 구성됨.
- 1997년부터, 법정 건강보험 수입기반 변화의 핵심은 첫째, 고용보다는 거주를 기준으로 한 전 국민으로의 법정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한 것과, 둘째, 피보험자의 보험료 기준을 임금소득에서 총소득으로 대체한 것 등임.

□ 일반제도의 경우 보험료 산정 기초는 피보험자의 「노동 대가로서 또는 노동 시 지불되는 금액」 이외에 유급휴가수당, 제 수당, 특별수당, 상여금 등 모든 현금과 현물의 이익, 톱으로 직접 또는 제3자가 개입하여 얻은 금액을 포함하며, 보험료 소득 상한은 없음.

- 특별제도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상공업자영업자 제도는 과세대상이 되는 자영소득을 기준으로 함. 농업제도에서는 농업근로자의 경우 임금과 기타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농업경영자와 자영농민은 가족원의 구성과 경지면적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몇 단계의 정액보험료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사회보장관련 보험료 요율 및 관련 조세의 세율은 의회가 사회보장재정법에 따라 매년 결정함.

- 근로자와 사용자의 건강보험료 부담비율은 사용자 부담비율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으며 자영업자는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함.
- 퇴직 피보험자의 보험료는 보충퇴직연금에서 공제함.

다. 일본의 보험료 부과체계

□ 일본의 건강보험제도는 우리나라에 비하여 50여년 정도 먼저 시행되었고,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의 상당 부분이 일본의 건강보험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건강보험의 관리운영체계를 단일보험자로 통합함으로써 일본의 건강보험제도와 다른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음.

- 일본의 의료보험제도는 독일의 의료보험제도로부터 영향을 받아 사회보험방식(SHI)을 채택하고 있음. 일본의 의료보험제도는 피보험자에 따라 건강보험(일반근로자 대상), 선원보험(선원 대상), 각종공제조합(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대상), 지역보험인 국민건강보험(농부, 자영업자, 피용자보험의 퇴직자 대상)으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음.

□ 일본의 모든 공공의료보험제도의 총재정은 보험료, 정부보조금, 환자의 법정본인부담금(co-payment)으로 구성되며 ‘건강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의 소득(봉급)에 대해 일정한 보험료율을 부과함으로써 산정됨.

- 조합관장건강보험의 경우 정부의 규제 하에 각각의 조합별로 보험급여와 보험료가 관리됨. 조합관장건강보험의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에 의해 각각 50%씩 부담하고 있음
- 정부관장건강보험의 보험료율은 사회보험청장의 요청에 따라 후생성 장관이 의료보험복지심의회의 회의를 거쳐 6.6%에서 9.1%의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정부관장건강보험의 보험료율은 2006년 3월 8.2%임.
- 선원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선주)에 의해 각각 부담된다. 선주는 사회보험청에 자신의 몫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몫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책임이 있음.
- 지역의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각 시정촌은 당해 연도의 추정된 총급여비에 서 정부보조금을 뺀 이후에, 각 가구에 보험료를 부과함. 시정촌은 다음과 같은 4개의 범주로부터 법적으로 고안된 방식을 결정하고 각 가구에 대한 연간보험료를 계산함. 소득, 자산, 피보험자수, 세대할당 보험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부과하고 있음.

라. 대만의 부과체계

□ 대만의 건강보험제도는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와 유사한 국민건강보험방식(NHI: National Health Insurance)의 유형으로 분류됨. 재원조달은 사회보험료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국가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료 외에 국고를 지원하는 체계를 가

지고 있음.

- 법률상 단일보험자인 중앙건강보험국(中央健康保險局: BNHI, The Bureau of National Health Insurance)이 제도의 실질적 관리운영기관으로서 본부와 6개지부(22개 출장소) 및 6개 보험자 직영 의료시설(연합외래진료센터)로 운영되고 있음.

□ 다만全民건강보험의 수입 재원은 주로 보험료이며 일부는 정부보조금으로 충당하며 지출은 대부분 보건의료서비스의 급여로 구성됨.

- 재정수입은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全民건강보험 총수입의 38%, 사용자 부담 보험료가 35%,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으로부터 지원되는 정부 보조금이 27%로 구성됨.
- 보험료 부과는 표준소득등급표에 의해 전 국민에게 동일기준을 적용하며, 적용류별로 대상에 따라 부담자의 부담률이 다르게 정해져 있음.
- 全民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식은 임금근로자와 월 소득이 없는 지역주민과 구분하고 있으며 개인별 피부양률에 따라 크게 좌우되며 평균피부양자수 0.78을 고려할 경우 전체평균은 8.1%수준임.
- 全民건강보험 보험재정의 국고지원은全民건강보험법 제27조에 의거 피보험자·사용자·정부 등 세 당사자가 각각 다른 비율로 보험료를 부담함.

IV.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가. 보장단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가구단위의 보장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개인단위의 보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법 제4조3항).

1) 가구단위 보장

- 가구 및 가구는 소득을 공유하는 생활공동체 및 구성원으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구분
 - 가구에 포함되는 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동거인을 제외)를 기본으로 하고, 주민등록에 기재되지 않는 자 중에서 가구개념 상 가구원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포함
 -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포함),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자 등 포함
 - 가구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첫째, 다른 법률에 의하여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경우로 현역군인, 보장시설, 교도소 등에 수용중인 자와 둘째, 소비공동체의 구성원이 아닌 경우로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중인 자, 가출자, 실종신고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

2) 개인단위 보장

- 개인단위 보장은 빈곤에 대한 예방적 기능 수행 - 가구원 중 어떤 개인만 보장하면 가구 전체가 빈곤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음.
 - 만성신부전증 등 의료비가 과대하게 지출되는 가구나 교육비 부담이 있는 차상위 계층의 가구는 이로 인하여 가구전체가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가구 전체가 빈곤해진 후에 국가가 보장하는 것보다 사전에 개인을 보장함으로써 가구의 빈곤을 예방할 수 있음.

나. 수급자 선정기준

1) 소득 및 재산기준(최저생계비)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

-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별 특성비용과 근로소득을 공제한 것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초공제와 부채를 제외한 후 소득환산율을 곱하면 구해짐.
- 재산의 기초공제는 지역별 전세가격(최저주거면적 전세가격) 등의 차이를 감안하되, 가구규모와 관계없이 대도시는 3,800만원, 중소도시는 3,100만원, 농어촌은 2,900만원 적용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은 일반재산의 경우 4.17%, 금융재산은 6.26%, 승용차는 월 100% 적용

다. 부양의무자기준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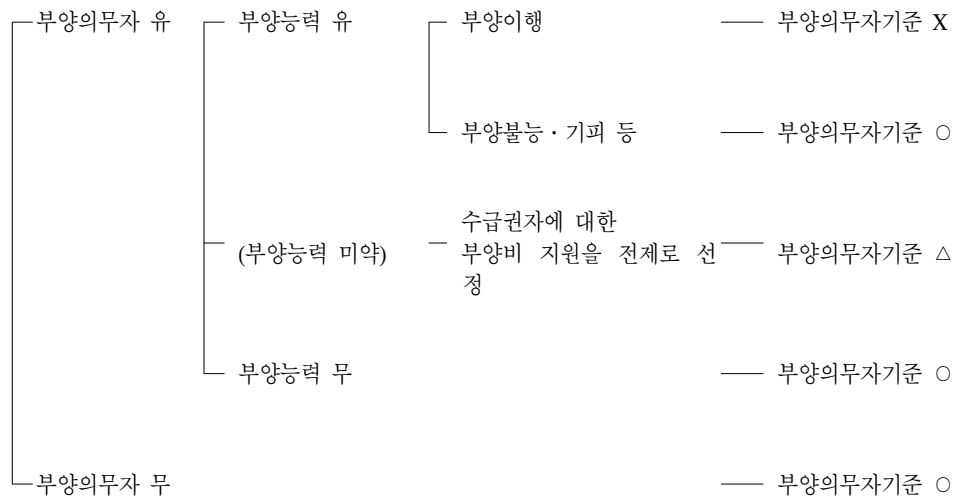
- ☐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 범위 이내의 자가 있는지 여부, 있을 경우 부양능력을 지니고 있는지, 부양능력을 지니고 있다면 실제로 부양을 하는지 여부로 구분

1) 부양의무자 범위

- ☐ 부양의무자 범위는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

1) 일본과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는 부양의무자기준이 없음. 우리 나라의 정서상으로는 부양의무자기준을 선정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음. 하지만 복지이념, 외국의 동향, 핵가족 중심으로서 가족구조의 변화 등을 감안할 때 부양의무자기준은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과제임.

〔그림 1〕 부양의무자 기준의 적용 도해



2)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

- 소득 또는 재산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 또는 재산기준의 합
의 1.2배 이상」인 부양의무자는 ‘부양능력이 있는 자’로 판정

2. 차상위계층에 대한 법적·행정적 개념정의

- 사전적 의미로 차상위(次上位)는 특정 선위의 이어지는 위치로, 수급층 바로 위의 계층
을 의미하는 것으로 통용되어 왔음.
- 차상위계층에 대한 법적·행정적 정의는 빈곤선 근처에 있으며 따라서 빈곤화의 가능성
이 높고,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할 수 있는 비수급층임.
- 그러나, 법상의 차상위계층의 기준은 그 설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왜곡이 이루어지
면서 사실 명확한 논리적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함.

3. 차상위계층에 대한 이론적 논의

□ 빈곤은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며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그리고 박탈과 사회적 배제 등으로 그 인식의 변화를 거듭하였음.

- 19세기 후반에 나타난 절대적 빈곤은 생존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지출을 기준으로 절대적인 수준을 상정하여 이에 미치는 못하는 생활상태를 빈곤으로 이해함.
- 절대적 빈곤에서도 상대성이 내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필수품 내지 수요의 상대성을 반영하여 사회의 평균적인 생활수준과 관련하여 빈곤을 정의하는 상대적 빈곤에 대한 논의가 1960년대와 70년대에 본격화되었음.
- 사회의 일반적인 생활수준과 관련하여 상대적 빈곤을 정의하는 방식은 한 사회의 평균 또는 중위소득을 사용하는 방식, 소득분배상의 하위 일정 비율의 집단을 빈곤층으로 정의하는 방식이 있음.
- 상대적 빈곤의 기준선 설정은 자의성의 한계를 갖고 있으나 선진 복지국가들에서 일반적인 빈곤분석을 위한 기준선 또는 보다 적극적이고 확대적인 빈곤정책을 수용하는데 기초적인 개념이 되고 있음.

□ 이외 빈곤 관련 개념으로는 사회적 배제, 빈곤취약성이 있음.

- 사회적 배제는 시기와 국가에 따라 그리고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며, 개인적 속성의 관점에서 광범위하고 다차원적인 빈곤개념이라고 보는 것과 사회속성의 관점에서 사회의 구조적 특성에 초점은 둔 것이 있음.
- 빈곤화에 초점을 둔 취약성은 빈곤 예방을 위한 사전적인 조치로 빈곤취약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최근의 빈곤취약성에 대한 연구로 개도국의 빈곤취약수준 또는 인구집단별 빈곤취약률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구단위 측정을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함.

□ 정책적인 빈곤은 특정 사회에서 빈곤문제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기 위하여 정책에서 기

준으로 활용하는 빈곤선에 따라 결정되며, 그 사회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음.

- 정책과 결부시켜 빈곤의 정의를 내리고자 할 때 그 사회의 전반적인 경제적 능력과 그 사회에서 빈곤을 퇴치하고자 하는 의지가 고려되어야 함.
- 자원의 한계라는 점과 결부하여 정책적 빈곤선은 절대적 빈곤 개념에 기초하여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임.

□ 차상위계층은 한계빈곤층 또는 근접빈곤이라는 개념들과 유사함.

- 많은 학자들이 정책적 빈곤선의 일정 비율 위선 이하의 계층을 한계빈곤층 또는 근접빈곤층으로 정의하고 있음. 빈곤선의 엄격성이 빈곤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평가하는데 적절하지 못하고 영향력이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데 부족하다는 점에서 출발한 개념임.

□ 단일한 빈곤선을 기준으로 빈곤, 비빈곤으로 이분하는 접근 외에 빈곤을 여러 수준으로 층화시켜 접근한 연구들이 있음.

- 빈곤은 연속적인 생활상태 상의 특정 선 이하의 생활상태이므로 단계적인 빈곤정의는 빈곤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에서 집단을 구분함에 있어 유용한 도구임.
- 단계적인 빈곤개념에 바탕하여 차상위계층은 생존 또는 기본 생계에서의 문제는 가까스로 탈피하였으나 개별급여의 필요한 계층으로 정의할 수 있음.
- 빈곤개념의 단계적 접근은 빈곤개념이 정책적 선택이며 연속성을 갖는 사회현실에서 특정 선의 정책적 선택이라는 점을 보다 분명하게 나타냄.

□ 차상위계층은 정책적인 빈곤개념으로 차상위계층의 설정은 상대적 빈곤을 포함한 절대 빈곤 이상의 집단을 대상으로 제도의 확대를 도모하는 바탕이 될 수 있음.

- 차상위계층은 기초적인 생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극빈층과 구별되는 빈곤층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아니지만 빈곤 상태에 있는 빈곤층 또는 한계빈곤층임.

- 차상위계층은 생존 또는 기본 생계에서의 문제는 가까스로 탈피하였으나 개별급여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
- 차상위계층은 절대빈곤화로의 전락 위험이 높은, 즉 취약성이 높은 집단으로 사회적 박탈이나 배제를 경험하는 집단으로 이해할 수 있음.

4. 차상위계층의 대안적 기준설정의 방식

□ 차상위계층의 의미를 반영하여 정책표적집단이 밀집한 층을 복지수요잠재층으로 명명하고 이 층을 가르는 기준선을 도출하여 차상위계층의 대안적 기준으로 제안함.

- 복지수요잠재층은 일반적 복지수요잠재층과 정책영역별 복지수요잠재층으로 구분하였음. 정책영역별 복지수요잠재층은 의료, 교육, 주거, 근로와 같은 욕구범주별 복지수요잠재층과 노인, 장애인, 아동과 같은 인구집단별 복지수요잠재층으로 구성함.
- 생활상의 어려움은 생계 외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욕구미충족의 상태도 포함하는 것이라 할 때, 각 기초 욕구의 미충족 가수가 높은 비중으로 나타나는 소득구간은 욕구범주별로 달라지게 됨.
- 일반적 복지수요잠재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을 받지 않는 한계빈곤층으로 일상적인 기초생활에서 절대빈곤층과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단임.
- 정책영역별 복지수요잠재층 중 의료복지수요잠재층, 교육복지수요잠재층, 주거복지수요잠재층, 근로복지수요잠재층은 각 부문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욕구를 스스로 충족하기 어려운 집단으로, 인구집단별 복지수요잠재층은 해당 인구집단에서 절대빈곤 이하의 집단과 생활양태가 유사한 집단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일반적 복지수요잠재층은 정책영역별 복지수요잠재층의 기초선 및 빈곤예방정책의 일차적 표적집단, 생계지원의 확대 및 긴급급여 등 제공을 위한 일선전문가의 자유재량 인정 범위로 활용될 수 있음.
- 정책영역별 복지수요잠재층 중 욕구범주별 복지수요잠재층은 개별 급여를 통하여

빈곤예방의 가능성을 높이고 충족되지 않은 기본욕구를 충족하여야 할 대상범위이며, 인구집단별 복지수요잠재층은 생활상의 어려움이 수급층 내 취약인구집단과 유사한 계층으로 인구집단별 각종 현금지원이나 현물지원의 대상으로 편입되어야 함.

□ 복지수요잠재층의 기준은 일반적 복지수요잠재층과 정책영역별 복지수요잠재층이 다르게 설정되었으며,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설정되었음.

- 일반적 복지수요잠재층은 욕구범주별 생활양태를 제외하고 기본적인 생계를 중심으로, 또는 보다 엄격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생활양태를 반영하여 기준을 설정하는 반면 정책영역별 복지수요잠재층의 기준은 일반적 복지수요잠재층 이상의 수준에서 정책영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설정할 것임.
- 복지수요잠재층의 기준설정은 현재의 차상위계층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소득을 중심으로 하되, 구체적인 정책대상은 다양한 기준을 병행하여 제시할 수 있으며, 특히 가구 경제적 상태에 중요한 요인인 재산기준을 고려할 것임.
- 복지수요잠재층 기준 설정은 첫째, 생활양태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설정하고, 둘째, 사회적 합의를 반영하도록 하며, 셋째, 절대적 빈곤선으로 활용되어 온 최저생계비에 연동하도록 하는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음.

V. 건강보험료 부과자료 분석

1. 부과자료 분석을 위한 데이터 구성

가. 발체기준

□ 모의운영을 위한 대상자는 전국 약 1903만세대 중 1%인 190,370세대(487,211명)를 전국 행정전산망상의 세대에서 표본추출하였음.

□ 전국행정전산망상의 세대에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구분하여 직장가입자

〈표 7〉 자동차자료

(단위 : CC, 원)

세대ID (연번)	구성원ID	차 종 (자동차용도)	배기량(cc)	화물적재량 (Ton)	연식	자동차세액	부과점수

2. 모의운영을 위한 기초자료 분포

〈표 8〉 건강보험적용현황 및 표본자료(1%) 현황

(단위 : 천명, 명, %)

구 분	의료 보장	건강 보험	직장적용대상자				지역적용대상자				의료 급여	사업 장 (개소)
			소계	가입 자	피부 양자	부양률 (명)	가입자	세대수	세대원	부양률 (명)		
건강보험 자격현황 (천명)	49,445	47,608	28,716	10,715	18,001	1.68	18,892	8,219	10,673	1.30	1,837	750,707
구성비	100.00	96.28	58.08	21.67	36.41		38.21	16.62	21.59		3.72	
표본자료 현황(명)	484,886	467,373	281,972	103,914	178,058	1.714	185,401	81,963	103,438	1.26	17,513	
구성비	100.00	96.39	58.15	21.43	36.72		38.24	16.90	21.33		3.61	
표본률		0.0098	0.0098	0.0097	0.0099		0.0098	0.0100	0.0097		0.0095	

주: 2007년 3월말 기준

〈표 9〉 세대별 종합소득보유수준

(단위 : 만원, %)

금 액	계		직장		지역	
	대상	비율	대상	비율	대상	비율
-	132,035	71.03	80,642	77.6	51,393	62.7
1만원 ~ 24만원	4,364	2.35	2,495	2.4	1,869	2.3
24만원 ~ 71만원	11,068	5.95	7,126	6.9	3,942	4.8
71만원 ~ 151만원	7,105	3.82	2,899	2.8	4,206	5.1
151만원 ~ 261만원	5,759	3.10	1,616	1.6	4,143	5.1
261만원 ~ 432만원	6,404	3.45	2,294	2.2	4,110	5.0
432만원 ~ 691만원	5,953	3.20	1,869	1.8	4,084	5.0
691만원 ~ 1,201만원	5,388	2.90	1,342	1.3	4,046	4.9
1,201만원 ~	7,801	4.20	3,631	3.5	4,170	5.1
계	185,877	100.00	103,914	100.0	81,963	100.0

주: 1) 지역가입자의 20분위 과세소득을 기준하여 분류, 소득 중 근로소득, 연금소득은 20%로 환산반영

2) 직장보수는 제외

〈표 10〉 세대별 과세재산보유수준

(단위 : 만원, %)

금 액	계		직 장		지 역	
	대상	비율	대상	비율	대상	비율
-	81,774	43.99	44,454	42.78	37,320	45.53
1만원 ~ 300 만원	5,081	2.73	1,424	1.37	3,657	4.46
300만원 ~ 804만원	5,907	3.18	1,809	1.74	4,098	5.00
804만원 ~ 1,446만원	7,673	4.13	3,571	3.44	4,102	5.00
1,446만원 ~ 2,140만원	8,871	4.77	4,773	4.59	4,098	5.00
2,140만원 ~ 2,950만원	9,325	5.02	5,276	5.08	4,049	4.94
2,950만원 ~ 4,056만원	10,079	5.42	5,931	5.71	4,148	5.06
4,056만원 ~ 5,600만원	10,496	5.65	6,436	6.19	4,060	4.95
5,600만원 ~ 8,000만원	11,261	6.06	7,157	6.89	4,104	5.01
8,000만원 ~ 12,324만원	12,131	6.53	8,001	7.70	4,130	5.04
12,324만원 ~ 23,139만원	12,154	6.54	8,056	7.75	4,098	5.00
23,139만원 ~	11,125	5.99	7,026	6.76	4,099	5.00
계	185,877	100.00	103,914	100.00	81,963	100.00

주: 1) 지역가입자의 20분위 과세재산을 기준하여 분류

2) 전월세자료는 제외

〈표 11〉 세대별 자동차보유현황

(단위 : 세대, %)

이상	계		직 장		지 역	
	대상	비율	대상	비율	대상	비율
미보유	90,445	48.66	45,284	43.58	45,161	55.10
1대보유	69,691	37.49	42,537	40.93	27,154	33.13
2대보유	20,117	10.82	12,612	12.14	7,505	9.16
3대보유	4,893	2.63	2,972	2.86	1,921	2.34
4대보유	584	0.31	400	0.38	184	0.22
5대보유	106	0.06	82	0.08	24	0.03
6대보유	32	0.02	21	0.02	11	0.01
7대보유	8	0.00	6	0.01	2	0.00
8대보유	-	-	-	-	-	-
9대보유	1	0.00	-	-	1	0.00
계	185,877	100.00	103,914	100.00	81,963	100.00

〈표 12〉 건강보험세대 과세자료 보유형태별 현황

(단위 : 세대, %)

	계		직장		지역	
	대상자	비율	대상자	비율	대상자	비율
적용대상자	185,877	100.00	103,914	100.0	81,963	100.00
소득, 재산, 자동차 모두보유	28,873	15.53	15,110	14.54	13,763	16.79
소득, 재산 보유	12,682	6.82	4,408	4.24	8,274	10.09
소득, 자동차 보유	5,840	3.14	1,888	1.82	3,952	4.82
소득만 보유	6,447	3.47	1,866	1.80	4,581	5.59
재산, 자동차 보유	38,700	20.82	27,994	26.94	10,706	13.06
재산만 보유	23,848	12.83	11,948	11.50	11,900	14.52
자동차 만 보유	22,019	11.85	13,638	13.12	8,381	10.23
과세자료미 보유	47,468	25.54	27,062	26.04	20,406	24.90

주: 직장보수는 제외

VI.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대상자 선정 개선방안

1. 학자금대출 일반현황

□ 제공자료 297,842 결측치 2건, 분석대상 297,840건

〈표 13〉 대상자 분위별 대출현황

(단위: 명, %)

대출내용	대상자 분위										계
	0	1	2	3	4	5	6	7	8	9	
무이자 (비율)	7,413 (2.5)	4,855 (1.6)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12,268 (4.1)
저리 (비율)	3,957 (1.3)	4,126 (1.4)	11,588 (3.9)	- (0.0)	- (0.0)	- (0.0)	- (0.0)	- (0.0)	- (0.0)	- (0.0)	19,671 (6.6)
일반 (비율)	1,108 (0.4)	33,283 (11.2)	35,946 (12.1)	37,333 (12.5)	36,226 (12.2)	32,474 (10.9)	16,729 (5.6)	21,926 (7.4)	30,786 (10.3)	20,090 (6.8)	265,901 (89.3)
계 (비율)	12,478 (4.2)	42,264 (14.2)	47,534 (16.0)	37,333 (12.5)	36,226 (12.2)	32,474 (10.9)	16,729 (5.6)	21,926 (7.4)	30,786 (10.3)	20,090 (6.8)	297,840 (100.0)

〈표 14〉 교육부산정 가구 환산소득과 대상자 분위별 대출현황

가구환산소득 (만원)		(이상) (미만)	소득 없음	1	1,020	1,380	1,830	2,220	2,640	3,180	3,885	4,650	7,020	계	(비율)
				~	~	~	~	~	~	~	~	~	~		
분 위				1,020	1,380	1,830	2,220	2,640	3,180	3,885	4,650	7,020			
0	무이자	6,728	237	229	142	77								7,413	(2.5)
	일 반	979	45	41	29	14								1,108	(0.4)
	저 리	3,563	125	131	85	53								3,957	(1.3)
1	무이자		4,855											4,855	(1.6)
	일 반	2,888	4,280										26,115	33,283	(11.2)
	저 리		4,126											4,126	(1.4)
2	일 반		395	17,073	18,478									35,946	(12.1)
	저 리		100	7,573	3,915									11,588	(3.9)
3	일 반				10,372	26,961								37,333	(12.5)
4	일 반					5,167	27,753	3,306						36,226	(12.2)
5	일 반								25,607	6,867				32,474	(10.9)
6	일 반									16,729				16,729	(5.6)
7	일 반									9,462	12,464			21,926	(7.4)
8	일 반										15,173	15,613		30,786	(10.3)
9	일 반											16,409	3,681	20,090	(6.7)
계		14,158	14,163	25,047	33,021	32,272	27,753	28,913	33,058	27,637	32,022	29,796	297,840	(100.0)	
(비율)		(4.8)	(4.8)	(8.4)	(11.1)	(10.8)	(9.3)	(9.7)	(11.1)	(9.3)	(10.8)	(10.0)	(100.0)		

〈표 15〉 대출대상자 가구의 환산소득 근거

환산소득 근거	빈 도	백분율
내역 없음	14,158	4.75
본인의 보험료	13,449	4.52
부모의 보험료	233,293	78.33
배우자의 보험료	4,714	1.58
본인과 부모의 보험료	29,160	9.79
본인과 배우자의 보험료	3,052	1.02
부모와 배우자의 보험료	8	-
가구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6	-
계	297,840	100.0

주: 가구 구성원 전체는 본인, 부모, 배우자가 모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가구임.

〈표 16〉 대출대상자 가구의 환산소득 근거

	빈 도	백분율
소득 산정근거 없음	30,488	10.2
지역보험료에 의한 산정	141,627	47.6
직장보험료에 의한 산정	100,798	33.8
직장과 지역보험료에 의한 산정	24,927	8.4
계	297,840	100.0

2. 대출당사자 현황 분석

〈표 17〉 학자금대출 당사자 성, 연령 현황

(단위: 명, %)

연령층	남 자		여 자		계	
	학 생	비 율	학 생	비 율	학 생	비 율
10세 이상~20세 미만	36,252	47.97	39,318	52.03	75,570	25.37
20세 이상~30세 미만	97,040	47.74	106,219	52.26	203,259	68.24
30세 이상~40세 미만	7,558	54.53	6,302	45.47	13,860	4.65
40세 이상~50세 미만	1,994	46.87	2,260	53.13	4,254	1.43
50세 이상~60세 미만	474	52.84	423	47.16	897	0.30
계	143,318	48.12	154,522	51.88	297,840	100.00

〈표 18〉 학자금대출 당사자 보험증기준 직업군

(단위: 명, %)

구 분	학자금 대출 당사자 직업			
	공무원,교직원	직장근로자	지역자영자	기타
계				
297,840	2,595	22,465	21,202	251,578
(100.00)	(0.87)	(7.54)	(7.12)	(84.47)

〈표 19〉 학자금대출 당사자 과세소득 및 과세재산 현황

소득 재산 (만원)		1	300	804	1,446	2,140	2,950	4,056	5,600	8,000	12,324	계	
	0	~	~	~	~	~	~	~	~	~	~		
		300	804	1,446	2,140	2,950	4,056	5,600	8,000	12,324			
0	292,181	312	345	582	647	676	636	566	541	432	286	297,204	(99.00)
1 ~ 24	57	-	1	2	2	6	2	4	1	2	2	79	(0.03)
24 ~ 71	64	-	3	3	5	5	7	2	4	8	8	109	(0.04)
71 ~ 151	83	1	4	6	3	8	2	5	6	5	1	124	(0.04)
151 ~ 261	59	-	-	1	4	2	4	3	6	2	4	85	(0.03)
261 ~ 432	58	1	4	4	2	4	4	4	7	8	7	103	(0.03)
432 ~ 691	27	-	1	3	1	2	2	3	5	3	1	48	(0.02)
691 ~ 1,201	28	1	2	1	5	4	2	1	1	3	2	50	(0.02)
1,201 ~	27	-	-	-	-	2	3	2	1	2	1	38	(0.01)
계	292,584	315	360	602	669	709	662	590	572	465	312	297,840	(10.00)
	(99.00)	(0.11)	(0.12)	(0.21)	(0.23)	(0.24)	(0.23)	(0.20)	(0.20)	(0.16)	(0.11)	(100.00)	

주: 직장보수는 고려하지 않음

3. 건강보험료를 기준한 학자금대출 개선방안

- 기존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대상자 선정기준은 단순히 보험료만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재산이나 기타 종합소득이 많은 경우에도 무이자나 저리를 받는 경우들이 발생하였음.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새롭게 도입된 차상위계층에 대한 학자금 대출 대상자 선정 개선방안을 위해 몇 가지 원칙을 정하였음.
 - 첫째, 대상자 선정 개선방안에서는 보험료 이외에도 종합소득, 재산, 자동차, 경제활동능력 등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대상자 선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
 - 둘째, 2007년 2학기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무이자 지원방식에 대해서는 앞에서 검토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차상위 개념을 최대한 준용하되 자료상의 한계 등으로 학자금 대출사업의 차상위 개념을 새롭게 설정하였음.
 - 셋째,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일반대상자 선정에 있어 소득은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가구균등화지수를 활용하여 표준화하여 사용하였음.
 - 넷째, 차상위계층의 규모는 현재 우리나라 차상위계층을 파악한 연구가 200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태조사자료 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자료의 규모를 인용하여 사용하고자 함.
 - 다섯째, 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의 종합소득, 재산, 자동차의 추정소득 산정방식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상의 등급이나 보험료율 등을 준용하여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음.

가. 학자금 대출 대상자 산출 과정

- 1단계: 학자금 대출대상자의 주민등록상의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자들에 대한 소득, 재산, 자동차 정보수집

(예외사항)

- 대출대상자가 부모와 거주를 달리할 경우는 부모의 거주를 같이하는 대상으로 모두 포함하여 계산함.
- 가구대상자로 포함하는 대상자는 대학생의 부를 기준으로 직계 존비속(대상자의 조모 부모, 형제자매, 조카 등)으로 한정하여 대상자를 포함함.

□ 추정소득에 의해 순위가 정해진 가구 중 차상위실태조사에서 산출된 규모인 전국가구의 7.29%를 차상위계층으로 산출하여 대상자를 선정함.

□ 가구별 소득 중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기준은 차상위실태조사에서 활용한 가구 균등화 지수 활용하여 보정하여 산정하며 산식은 다음 식과 같음.

$$- \text{가구원수를 보정한 소득}(Y) = \text{대상 가구의 추정소득}(X) \div \sqrt{N} (N \text{은 가구원수})$$

(Y소득 순위에 따라 중 7.29%까지가 차상위계층임.)

□ 2단계: 대출대상자의 가구의 소득 산정

1) 대상자의 본인, 배우자 또는 부모가 지역가입자인 경우(약 47.6%)

□ 지역가입자의 소득과약률(500만원 이상 13.5%, 1만원 이상 36.53%)이고 소득, 재산, 자동차가 전혀 없는 무자료 세대(약 24%- 전월세자료 포함시 5%)임.

- 따라서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건강보험에서 활용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가구 구성원의 경제활동능력, 국세청 소득, 재산, 자동차를 통해 소득을 추정하여 활용함.
- 4가지요소(가구 구성원의 경제활동능력, 국세청 소득, 재산, 자동차)별 각각 소득을 산출하여 합산함.

□ 가구 구성원의 경제활동 능력에 대한 소득환산 방식

- 첫째, 가구 구성원 각각 개인의 경제활동참가율 점수를 건강보험료 부과방식대로 산정함.

〈표 20〉 경제활동참가율 점수

()은 점수임

구 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성 · 연 령	남성	20세 미만 65세 이상 (1.4)	60세 이상 65세 미만 (4.8)	20세 이상 3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5.7)	30세 이상 50세 미만 (6.6)
	여성	20세 미만, 65세 이상 (1.4)	60세 이상 65세 미만 (3.0)	25세 이상 3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4.3)	20세 이상 25세 미만, 30세 이상 50세 미만 (5.2)

비고: 1)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또는 제14호에 규정된 국가유공자는 성·연령에 관계없이 1구간으로 적용한다.

- 둘째, 가구로 산정된 경제활동참가율 점수를 합산하여 건강보험료 부과 등급표 상의 부과점수와 부과점수를 통한 추정소득을 산정함.
- 추정소득 산정방식은 본문에 자세히 기술하였음.

〈표 21〉 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 점수 및 추정소득 표

등 급	경제활동참가율	부과점수	부과보험료	추정소득
1	1.4 - 2.5	20	2,798	117,317
2	2.6 - 3.7	32	4,477	187,706
3	3.8 - 4.9	44	6,156	258,096
4	5.0 - 6.1	56	7,834	328,486
5	6.2 - 7.3	68	9,513	398,876
6	7.4 - 8.4	81	11,332	475,132
7	8.5 - 9.6	93	13,011	545,522
8	9.7 - 10.8	105	14,690	615,912
9	10.9 - 12.0	117	16,368	686,302
10	12.1 - 13.2	129	18,047	756,692
11	13.3 - 14.4	141	19,726	827,082
12	14.5 - 15.6	153	21,405	897,472
13	15.7 - 16.8	165	23,084	967,862
14	16.9 - 18.0	178	24,902	1,044,117
15	18.1 - 19.2	190	26,581	1,114,507
16	19.3 - 20.3	202	28,260	1,184,897
17	20.4 - 21.5	214	29,939	1,255,287
18	21.6 - 22.7	226	31,617	1,325,677
19	22.8 - 23.9	238	33,296	1,396,067
20	24.0 - 25.1	250	34,975	1,466,457
21	25.2 - 26.3	263	36,794	1,542,713
22	26.4 - 27.5	275	38,473	1,613,103
23	27.6 - 28.7	287	40,151	1,683,493
24	28.8 - 29.9	299	41,830	1,753,883
25	30.0 - 31.1	311	43,509	1,824,273
26	31.2 - 32.2	323	45,188	1,894,662
27	32.3 - 33.4	335	46,867	1,965,052
28	33.5 - 34.6	348	48,685	2,041,308
29	34.7 - 35.8	360	50,364	2,111,698
30	35.9 이상	372	52,043	2,182,088

□ 지역가입자 중 종합소득의 반영

-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이 500만원 이상 13.5%이고 1만원 이상 36.53%로 현저히 낮은 상태임.
- 특히 현재 파악된 소득도 과소신고된 소득으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지역가입자의 종합소득도 건강보험에서 활용하고 있는 추정소득 산정방식에 따라 각 등급별 소득반영률을 적용하여 추정소득을 산정하였음.

〈표 22〉 소득등급별 점수 및 추정소득

등급	소득금액(만원)	점 수	부과보험료	추정소득	소득반영률
0	100이하	36	4,969	208,333	5.00
0	100 초과 - 200 이하	107	14,906	625,000	5.00
0	200 초과 - 300 이하	178	24,844	1,041,667	5.00
0	300 초과 - 400 이하	249	34,781	1,458,333	5.00
0	400 초과 - 500 이하	320	44,719	1,875,000	5.00
1	500 초과 - 600 이하	380	53,162	2,229,015	4.86
2	600 초과 - 700 이하	409	57,219	2,399,124	4.43
3	700 초과 - 800 이하	437	61,136	2,563,367	4.10
4	800 초과 - 900 이하	466	65,193	2,733,476	3.86
5	900 초과 - 1,000 이하	494	69,111	2,897,719	3.66
6	1,000 초과 - 1,100 이하	523	73,168	3,067,828	3.51
7	1,100 초과 - 1,200 이하	552	77,225	3,237,937	3.38
8	1,200 초과 - 1,300 이하	580	81,142	3,402,180	3.27
9	1,300 초과 - 1,400 이하	609	85,199	3,572,289	3.18
10	1,400 초과 - 1,500 이하	637	89,116	3,736,532	3.09
11	1,500 초과 - 1,600 이하	666	93,173	3,906,642	3.02
12	1,600 초과 - 1,700 이하	695	97,231	4,076,751	2.96
13	1,700 초과 - 1,800 이하	723	101,148	4,240,994	2.91
14	1,800 초과 - 1,900 이하	752	105,205	4,411,103	2.86
15	1,900 초과 - 2,020 이하	780	109,122	4,575,346	2.80
16	2,020 초과 - 2,140 이하	809	113,179	4,745,455	2.74
17	2,140 초과 - 2,270 이하	838	117,236	4,915,564	2.68
18	2,270 초과 - 2,410 이하	866	121,153	5,079,807	2.61
19	2,410 초과 - 2,560 이하	895	125,211	5,249,916	2.54
20	2,560 초과 - 2,710 이하	923	129,128	5,414,159	2.47
21	2,710 초과 - 2,880 이하	952	133,185	5,584,268	2.40
22	2,880 초과 - 3,050 이하	981	137,242	5,754,377	2.33
23	3,050 초과 - 3,240 이하	1,009	141,159	5,918,621	2.26
24	3,240 초과 - 3,430 이하	1,038	145,216	6,088,730	2.19
25	3,430 초과 - 3,640 이하	1,066	149,133	6,252,973	2.12
26	3,640 초과 - 3,860 이하	1,095	153,191	6,423,082	2.06
27	3,860 초과 - 4,100 이하	1,124	157,248	6,593,191	1.99
28	4,100 초과 - 4,350 이하	1,152	161,165	6,757,434	1.92
29	4,350 초과 - 4,610 이하	1,181	165,222	6,927,543	1.86
30	4,610 초과 - 4,890 이하	1,209	169,139	7,091,786	1.79
31	4,890 초과 - 5,190 이하	1,240	173,476	7,273,627	1.73
32	5,190 초과 - 5,500 이하	1,271	177,813	7,455,468	1.67
33	5,500 초과 - 5,840 이하	1,303	182,290	7,643,174	1.62
34	5,840 초과 - 6,190 이하	1,336	186,906	7,836,746	1.56
35	6,190 초과 - 6,560 이하	1,371	191,803	8,042,050	1.51

등 급	소득금액(만원)	점 수	부과보험료	추정소득	소득반영률
36	6,560 초과 - 6,960 이하	1,407	196,839	8,253,220	1.47
37	6,960 초과 - 7,380 이하	1,443	201,876	8,464,390	1.42
38	7,380 초과 - 7,840 이하	1,481	207,192	8,687,291	1.37
39	7,840 초과 - 8,320 이하	1,520	212,648	8,916,059	1.32
40	8,320 초과 - 8,820 이하	1,560	218,244	9,150,692	1.28
41	8,820 초과 - 9,360 이하	1,601	223,980	9,391,191	1.24
42	9,360 초과 - 9,930 이하	1,643	229,856	9,637,556	1.20
43	9,930 초과 - 10,600 이하	1,687	236,011	9,895,652	1.16
44	10,600 초과 - 11,200 이하	1,731	242,167	10,153,748	1.12
45	11,200 초과 - 11,900 이하	1,776	248,462	10,417,711	1.08
46	11,900 초과 - 12,600 이하	1,823	255,038	10,693,405	1.05
47	12,600 초과 - 13,400 이하	1,871	261,753	10,974,964	1.01
48	13,400 초과 - 14,200 이하	1,920	268,608	11,262,390	0.98
49	14,200 초과 - 15,000 이하	1,969	275,463	11,549,816	0.95
50	15,000 초과 - 15,800 이하	2,020	282,598	11,848,973	0.92
51	15,800 초과 - 16,600 이하	2,247	314,355	13,180,516	0.98
52	16,600 초과 - 17,400 이하	2,474	346,113	14,512,059	1.02
53	17,400 초과 - 18,300 이하	2,714	379,689	15,919,857	1.07
54	18,300 초과 - 19,200 이하	2,969	415,363	17,415,644	1.11
55	19,200 초과 - 20,100 이하	3,224	451,038	18,911,430	1.15
56	20,100 초과 - 21,100 이하	3,494	488,811	20,495,203	1.19
57	21,100 초과 - 22,100 이하	3,777	528,402	22,155,233	1.23
58	22,100 초과 - 23,200 이하	4,074	569,953	23,897,384	1.27
59	23,200 초과 - 24,400 이하	4,400	615,560	25,809,644	1.30
60	24,400 초과 - 25,600 이하	4,740	663,126	27,804,025	1.33
61	25,600 초과 - 26,800 이하	5,080	710,692	29,798,407	1.36
62	26,800 초과 - 28,200 이하	5,449	762,315	31,962,897	1.39
63	28,200 초과 - 29,500 이하	5,831	815,757	34,203,644	1.42
64	29,500 초과 - 31,000 이하	6,228	871,297	36,532,377	1.45
65	31,000 초과 - 32,500 이하	6,653	930,755	39,025,354	1.47
66	32,500 초과 - 34,100 이하	7,092	992,171	41,600,453	1.50
67	34,100 초과 - 35,800 이하	7,559	1,057,504	44,339,795	1.52
68	35,800 초과 - 37,600 이하	8,055	1,126,895	47,249,245	1.54
69	37,600 초과 - 39,400 이하	8,565	1,198,244	50,240,818	1.57
70	39,400 초과	9,104	1,273,650	53,402,499	1.63

□ 지역가입자 중 재산의 소득환산 방식

- 재산의 소득환산 방식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상의 환산방식과 동일하게 적용함.
- 전월세 자료를 포함하여 계산하며, 보험료부과에서 반영비율이 30%를 반영하여 계산함.

〈표 23〉 재산등급별 점수

등 급	재산금액(만원)	점 수	부과보험료	보험료 추정소득	기초생활 추정소득
1	100 초과 - 450 이하	22	3,078	129,048	114,675
2	450 초과 - 900 이하	44	6,156	258,096	281,475
3	900 초과 - 1,350 이하	66	9,233	387,145	469,125
4	1,350 초과 - 1,800 이하	97	13,570	568,985	656,775
5	1,800 초과 - 2,250 이하	122	17,068	715,631	844,425
6	2,250 초과 - 2,700 이하	146	20,425	856,411	1,032,075
7	2,700 초과 - 3,150 이하	171	23,923	1,003,057	1,219,725
8	3,150 초과 - 3,600 이하	195	27,281	1,143,836	1,407,375
9	3,600 초과 - 4,050 이하	219	30,638	1,284,616	1,595,025
10	4,050 초과 - 4,500 이하	244	34,136	1,431,262	1,782,675
11	4,500 초과 - 5,020 이하	268	37,493	1,572,042	1,984,920
12	5,020 초과 - 5,590 이하	294	41,131	1,724,553	2,212,185
13	5,590 초과 - 6,220 이하	320	44,768	1,877,065	2,462,385
14	6,220 초과 - 6,930 이하	344	48,126	2,017,845	2,741,775
15	6,930 초과 - 7,710 이하	365	51,064	2,141,027	3,052,440
16	7,710 초과 - 8,590 이하	386	54,001	2,264,210	3,398,550
17	8,590 초과 - 9,570 이하	412	57,639	2,416,721	3,786,360
18	9,570 초과 - 10,700 이하	439	61,416	2,575,099	4,226,295
19	10,700 초과 - 11,900 이하	465	65,054	2,727,610	4,712,100
20	11,900 초과 - 13,300 이하	490	68,551	2,874,256	5,254,200
21	13,300 초과 - 14,800 이하	516	72,188	3,026,767	5,858,850
22	14,800 초과 - 16,400 이하	535	74,847	3,138,218	6,505,200
23	16,400 초과 - 18,600 이하	559	78,204	3,278,998	7,297,500
24	18,600 초과 - 20,400 이하	586	81,981	3,437,375	8,131,500
25	20,400 초과 - 22,700 이하	611	85,479	3,584,021	8,986,350

등 급	재산금액(만원)	점 수	부과보험료	보험료 추정소득	기초생활 추정소득
26	22,700 초과 - 25,300 이하	637	89,116	3,736,532	10,008,000
27	25,300 초과 - 28,100 이하	659	92,194	3,865,581	11,133,900
28	28,100 초과 - 31,300 이하	681	95,272	3,994,629	12,384,900
29	31,300 초과 - 34,900 이하	706	98,769	4,141,275	13,802,700
30	34,900 초과 - 38,800 이하	731	102,267	4,287,920	15,366,450
31	38,800 초과 - 43,200 이하	757	105,904	4,440,432	17,097,000
32	43,200 초과 - 48,100 이하	785	109,822	4,604,675	19,036,050
33	48,100 초과 - 53,600 이하	812	113,599	4,763,052	21,204,450
34	53,600 초과 - 59,700 이하	841	117,656	4,933,161	23,623,050
35	59,700 초과 - 66,500 이하	873	122,133	5,120,868	26,312,700
36	66,500 초과 - 74,000 이하	905	126,610	5,308,574	29,294,250
37	74,000 초과 - 82,400 이하	937	131,086	5,496,281	32,609,400
38	82,400 초과 - 91,800 이하	972	135,983	5,701,585	36,320,700
39	91,800 초과 - 103,000 이하	1,012	141,579	5,936,218	40,615,800
40	103,000 초과 - 114,000 이하	1,049	146,755	6,153,254	45,244,500
41	114,000 초과 - 127,000 이하	1,084	151,652	6,358,558	50,248,500
42	127,000 초과 - 142,000 이하	1,125	157,388	6,599,057	56,086,500
43	142,000 초과 - 158,000 이하	1,168	163,403	6,851,287	62,550,000
44	158,000 초과 - 176,000 이하	1,207	168,859	7,080,055	69,639,000
45	176,000 초과 - 196,000 이하	1,244	174,036	7,297,090	77,562,000
46	196,000 초과 - 218,000 이하	1,390	194,461	8,153,501	86,319,000
47	218,000 초과 - 242,000 이하	1,336	186,906	7,836,746	95,910,000
48	242,000 초과 - 270,000 이하	1,380	193,062	8,094,843	106,752,000
49	270,000 초과 - 300,000 이하	1,429	199,917	8,382,268	118,845,000
50	300,000 초과 -	1,475	206,353	8,652,096	125,100,000

□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의 소득환산 방식

- － 자동차의 소득환산방식은 사용연식과 배기량에 따라 산정된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를 소득으로 환산함.

〈표 24〉 자동차등급별 점수와 추정소득

구 분			사용연수별 적용율 및 결정 점수				추정소득			
등급	차 종	배 기 량 등	3년 미만	3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9년 미만	9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9년 미만	9년 이상
			100%	80%	60%	40%	100%	80%	60%	40%
1	승용자동차	800cc 이하	18	14	11	7	105,585	82,122	64,524	41,061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4톤이하								
	특수자동차	소형 특수자동차								
2	승용자동차	800cc 초과 1,000cc 이하	28	23	17	11	164,243	134,914	99,719	64,524
	승합자동차	소형 일반버스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4톤 초과 5톤이하								
	기타승용자동차	모든차량								
3	승용자동차	1,000cc 초과 1,500cc 이하	59	47	35	24	346,084	275,694	205,304	140,780
	승합자동차	대형 일반버스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5톤초과								
	특수자동차	대형 특수자동차								
4	승용자동차	1,500cc 초과 2,000cc 이하	113	90	68	45	662,839	527,925	398,876	263,962
5	승용자동차	2,000cc 초과 2,500cc 이하	155	124	93	62	909,203	727,363	545,522	363,681
6	승용자동차	2,500cc 초과 3,000cc 이하	186	149	111	74	1,091,044	874,008	651,107	434,071
7	승용자동차	3,000cc 초과	217	173	130	87	1,272,885	1,014,788	762,558	510,327

2) 대상자의 가구가 직장가입자인 경우(약 40.2%)

- 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되, 기타 종합소득이나 재산, 자동차가 있는 경우는 추정소득으로 환산하여 추가함.
 - － 직장가입자는 모두 갑종근로소득자료가 있으므로, 지역에 적용한 경제활동 추정소득을 제외한 월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함.
 - － 근로소득이외에 사업소득 등 기타 종합소득은 지역가입자 추정소득 방식에 따라 반영하고, 재산과 자동차도 지역가입자 방식대로 반영함.

3)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같이 있는 세대(약 8.4%)

- 직장가입자 소득산출 방식에 따라 소득을 계산하고, 추가적으로 지역가입자로 포함되어 있는 대상자의 전월세자료까지 포함하여 월 소득을 산정하고자 함.
 - － 지역가입자 경제활동 추정소득은 반영하지 않음.

VII. 결론 및 정책제언

-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은 서민·중산층 부모의 자녀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들의 자립심 고취를 통해 능력과 의욕이 있는 학생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교육복지 국가를 달성하고자 시작된 제도임.
- 그런데 학자금 대출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형평성이 담보되지 않은 기준과 소득산정의 문제 등으로 서민·중산층이 아닌 고소득자들에게 무이자·저리 혜택을 주는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였음.
- 따라서 본 연구는 2007년 2학기부터 학자금대출 대상자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차상위계층, 그리고 2% 금리를 보전하는 기타 저소득층 선발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자료를 활용하여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 특히 보험료자료 만이 아니라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종합소득이나 재산, 자동차 등 생활수준을 대변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활용하여 고소득자가 무이자나 저리 용자를 받지 못하도록 방안을 모색하였음.

□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무이자·저리 대상자 선정 기준은 선행연구를 근거하여 큰 틀을 제시한 것임.

- 따라서 실제 적용 시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실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적용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구체적인 세부지침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예를 들어 자료가 검출되지 않는 가구구성원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저리대상자 규모를 어디까지 결정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추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대상자 선정 연구에서 결정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임.
- 그리고 학기별로 변화하는 차상위규모, 보험료율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계속적으로 선정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직장·지역간 형평한 추정소득 환산 방식은 기존 다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을 참조하여 실시하였음.

- 하지만, 기존 연구에 대한 검증이 미흡한 상태에서 부득이한 선택이었음.
- 따라서 향후에는 건강보험 직장·지역간 형평한 소득산정 방식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더 나아가서는 국세청에서 자영자의 소득과약률을 높여 추정소득이 아닌 실제 파악된 소득으로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